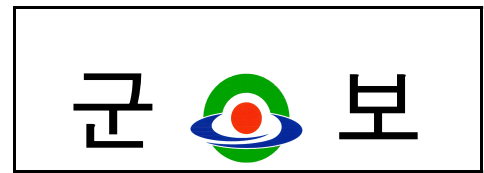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06호 2019. 11. 21.(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조례 제2375호)
-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376호)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77호)
-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378호)
-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379호)
-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380호)
-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381호)

훈 령

-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예천군 훈령 제418호)

공 고

-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정정) 열람 공고(예천군 공고 제2019-1269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75호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산부

제4조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격을 재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제4조제1호)

○ 당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 변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나. 이용대상자에 임신부 추가(제4조제2호)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76호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하여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지원 전반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립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활동서비스 제공 계획
2.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3. 취업 교육 및 구직지원에 관한 사항

4. 저소득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 방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④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 경비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일상생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장구 및 수리 지원

8. 취업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체험홈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군수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대상)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4조3항에 따라 센터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사업
2.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3. 장애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 등 (제3조)

-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

나.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

-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다. 지원 (제5조)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지원사 경비, 주거환경개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

라. 우선지원대상 (제7조)

- 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제8조)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77호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민간위탁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예천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가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간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2. 제1호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필요한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 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료 3천만원 미만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능력
3.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사업운영 투명성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기관을 선정한다.

③ 공개모집에 따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을 거

쳐 선정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 별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하로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등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3. 민간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제21조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연간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 지원)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지도·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

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수탁기관의무 등에 대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 등(제4조)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나. 민간위탁 사무(제5조)

-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운영에 관한 사무

다.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제7조)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 부담능력
-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 위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사업운영 투명성 등

라. 위탁기관의 선정방법(제8조)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도 있음
- 위탁기관선정 후 선정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마. 위탁계약의 해지 등(제18조)

- 위탁기관이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탁계약조건 위반한 경우,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78호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 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의 진상조사 및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 확인되어진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정의 (제2조)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한 희생자로 인정되거나 또는 사법부의 판단 입증 받은 사람

나. 지원사업 등 (제5조)

-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79호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

지)

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항
5.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등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아동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
2.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군수는 대기오염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 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과 그 발생의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정보제공,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협력체계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건강의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 미세먼지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및 미세먼지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항 등

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8조)

-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아동관련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등의 사업 등

다. 정보제공 (제9조)

- 군수는 대기오염경보가 발생된 경우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제공

라.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10조)

- 야외행사 진행 자제 및 마스크 지원 등 참석자 보호 조치

마. 협력체계 구축 (제11조)

- 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 필요시 민관협의체 등 구성하여 운영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80호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희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 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보조금
2.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수입
3. 기타 수입금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

-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천군 농촌인력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나.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제4조)

-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 지원센터로 지정
-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음
- 지원센터는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

다. 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

-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81호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계획
7.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계획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천경찰서, 예천교육지원청, 교통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교사, 교통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

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2.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
4. 그 밖에 교통지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

-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

-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등

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제8조)

-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교사, 교통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구입비, 홍보비 및 행사실비 등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11월 2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18호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예천군과 그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을”을 “규정함을”으로 한다.

제2조 중 “「행정감사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감사규정」”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제4호 및 제4조 중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각각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예천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 심의회 개최 시마다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회가 종료되면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중 “피감사 기관장”을 “감사대상 기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피감사자”를 각각 “감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를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감사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받았으면”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서식에 의거”를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군수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제11조제2항 중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포함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천군 및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을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면책심사신청 안내

예천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 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의 경우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기준	신청내용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 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 사항				
신 청 내 용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 개요	일시		장소	
	안건			
	양정 (안)			
심사결과				

20 . . .

예천군 면책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간사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별지 제5호 서식】

면책신청(심사)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건명	신청(심사) 대상자			심 사 연월일	심사결과	결 과 통보일
			소속기관	직위 (직급)	성 명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9조 【별지 제7호 서식】

경고 등 처분대장

[illegible]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제5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나. 적극행정 면책 신청기한 폐지 (제9조)

- 면책심사 신청기한(감사종료 20일 이내) 삭제로 면책신청 기회 확대

다. 서식 및 용어정비

- 면책심사 신청 안내 및 신청서 등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불합리한 용어 정비(피감사 → 감사대상, 피감사기관 → 감사대상기관)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정정) 열람공고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747번지 일원의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1일

예 천 군 수



1. 열람기간 : 2019. 11. 21. ~ 2019. 12. 09.(14일 이상)(공휴일제외)
2. 열람장소 : 예천군 체육사업소
3. 열람내용 : 제1호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4. 정정사유 : 열람기간 변경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1)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예천1)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13,165.3	-	13,165.3	경고12-230 (2012.7.31)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변경)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계		13,165.3	13,165.3	3,384.8	4,520.1				127	144	
기 반 시 설	소 계	2,153.8	1,374.9	2,153.8	1,374.9				22	16	
	도 로	1,133.1	699.5	1,133.1	699.5				-	-	
	광 장	1,020.7	675.4	1,020.7	675.4				22	16	
	휴 양 시 설	267.6	309.3	267.6	309.3				3	14	
운 동 시 설		963.4	2,774.3	963.4	2,774.3				32	35	
관 리 시 설		-	61.6	-	61.6				-	2	
녹 지		9,780.5	8,645.2	-	-				70	77	
공원시설율 (법정 40%이하)		4,520.1 / 13,165.3 x 100 = 34.3%									
공원건폐율 (법정 20%이하)											

2) 세부시설조서(변경)

구분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13,165.3	13,165.3	3,384.8	4,520.1					127	144	
기 반 시 설	소 계			2,153.8	1,374.9	2,153.8	1,374.9					22	16	
	도 로		전지역	1,133.1	699.5	1,133.1	699.5					-	-	
	광장		3개소	1,020.7	675.4	1,020.7	675.4					22	16	
	공정의 마당	1-1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227.3	227.3	227.3	227.3							
	교감의 마당	1-2		326.4	210.5	326.4	210.5							
	자아의 마당	1-3		467.0	237.6	467.0	237.6							
	앞음벽											7	4	
	파고라“A“											1	1	
	평의자											4	2	
	자전거 보관대											-	1	
	등의자											2	-	
	수목보호관											8	8	
휴 양 시 설	소 계			267.6	309.3	267.6	309.3					3	14	
	휴게쉼터		2개소	267.6	309.3	267.6	309.3					3	14	
		2-1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160.2	309.3	160.2	309.3							
		2-2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	107.4	-	107.4	-							
	수목보호관											3	-	
	앞음벽											-	2	
	파고라“A“											-	2	
	평의자											-	4	
	음수대											-	1	
	허리돌리 기운동											-	1	
	양다리 운동											-	1	
	윗목일으 키기운동											-	1	
	등허리 근육풀기 운동											-	1	
	옆파도 타기운동											-	1	

구분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동)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운동시설	소 계			963.4	2,774.3	963.4	2,774.3					32	35	
	족구장	3-1	예천군호명면금능리 747	528.2	528.2	528.2	528.2							
	배드민턴장	3-2		297.7	-	297.7	-							
	체력단련장	3-3		137.5	-	137.5	-							
	테니스장	3-4		-	748.7	-	748.7							
	테니스장	3-5		-	748.7	-	748.7							
	테니스장	3-6		-	748.7	-	748.7							
	가벽											1	1	
	앉음벽											4	2	
	파고라“A											2	-	
	허리돌리기운동											1	-	
	양다리운동											1	-	
	윗몸일으키기운동											1	-	
	등허리근육풀기운동											1	-	
	옆파도타기운동											1	-	
	등의자											8	16	
	평의자											4	-	
	메쉬웬스											2	4	
	출입문											2	4	
	배드민턴지주											1	-	
	족구지주											1	1	
	테니스지주											-	3	
	배드민턴네트											1	-	
	족구네트											1	1	
	테니스네트											-	3	
관리시설	소계		예천군호명면금능리 747	-	61.6	-	61.6							
	관리동			-	52.5	-	52.5							
	화장실			-	9.1	-	9.1							
	컨테이너관리실			-		-						-	1	
녹지	간이화장실			-		-						-	1	
	녹지		전지역	9,780.5	8,645.2							70		
	평의자											3		
	종합안내판											1		
	디딤돌“A											66		

3) 도로결정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631.1	1,133.1				
변경					469.8	699.5				
폐지	소로	3	1	3.3	26.7	88.2	진입로	금능리 747	소로 3-4	
폐지	소로	3	2	3.3	45.4	149.8	진입로	금능리 747	소로 3-5	
폐지	소로	3	3	2.3	29.9	68.7	연결로	소로 3-2	교감의마당 1-2	
폐지	소로	3	4	2.3	14.1	32.5	연결로	소로 3-1	금능리 747	
폐지	소로	3	5	2.3	35.8	82.4	연결로	소로 3-2	금능리 747	
기정	소로	3	6	1.5	123.9	185.8	산책로	금능리 747	소로 3-8	
기정	소로	3	7	1.5	160.1	240.1	산책로	소로 3-6	소로 3-8	
변경	소로	3	7	1.5	156.9	235.4	산책로	소로 3-6	소로 3-8	
기정	소로	3	8	1.5	113.4	170.1	산책로	궁정의마당 1-1	소로 3-6	
기정	소로	3	9	1.5	44.6	66.9	산책로	소로 3-7	소로 3-8	
폐지	소로	3	10	1.3	8.2	10.7	연결로	자아의마당 1-3	휴게쉼터 2-2	
폐지	소로	3	11	1.3	10.4	13.6	연결로	자아의마당 1-3	휴게쉼터 2-2	
폐지	소로	3	12	1.3	10.4	13.6	연결로	자아의마당 1-3	소로 3-2	
폐지	소로	3	13	1.3	8.2	10.7	연결로	자아의마당 1-3	소로 3-2	
신설	소로	3	14	1.0	11.0	11.1	연결로	휴양시설2-1	화장실	
신설	소로	3	15	1.5	20.0	30.2	연결로	자아의마당 1-3	소로3-7	

4. 열람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내에 일반인에게 보임)

5. 의견제출 : 예천군 체육사업소로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 체육사업소(☎054-650-6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